

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동향

[24년 상반기]

2024. 3.

본 자료는 외국인투자자 및 납세자 등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4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외투·국내복귀·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(☎ 02-3497-1061)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목 차

1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 (’24. 7. 1. 시행 예정)	p.1
2 선상건본품 반출 채취 근거 마련 (’24. 1. 1. 시행)	p.2
3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(’24. 1. 1. 시행)	p.3
4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(’24. 1. 1. 시행)	p.4
5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(’24. 1. 1. 시행)	p.5
6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 (’24. 1. 1. 시행)	p.6
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(’24. 3. 1. 시행 예정)	p.7
8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(’24. 1. 1. 시행)	p.8
9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(’23. 12. 27. 시행)	p.9
10 유니패스 전담 운영 공공기관 설립 (’24. 7. 1. 시행 예정)	p.10
11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(’24. 1. 1. 시행)	p.11

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

- 납세자(기업)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*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‘과세정보 전송 요구권’을 신설**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,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
* 본인, 관세사,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

** 기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으로 제한(민간기업 제외)



< 사 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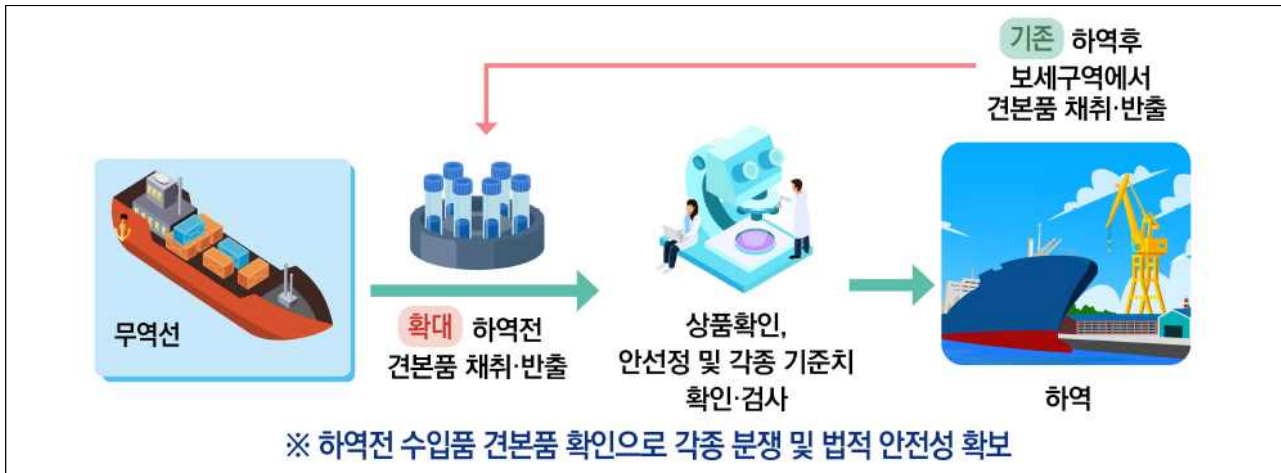
개정 전	S사는 「무역My데이터플랫폼」에 직접 접속하여 내려받은 잠정가격 신고 자료를 A관세사에게 전달, A관세사는 기한 내에 확정가격신고 이행
개정 후	S사는 「무역My데이터플랫폼」에 접속하여 자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1년 주기로 A관세사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, A관세사는 전송받은 S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이용해 곧바로 확정가격신고 이행

- 【기대효과】 민간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
- 【시행일】 '24. 7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」 제116조의6 신설)

2 선상견본품 반출 채취 근거 마련

-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하게 하여 수입업체 애로 해소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한다.



< 사 례 >

개정전	수입원유 견본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이후 채취함에 따라, 해당 물품이 오염된 경우 오염시점이 하역 전, 하역 후 중 언제인지 확인불가 (원유 오염 여부 확인은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)
개정후	선상에서도 원유에 대한 견본품을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해당물품의 하역 전 오염 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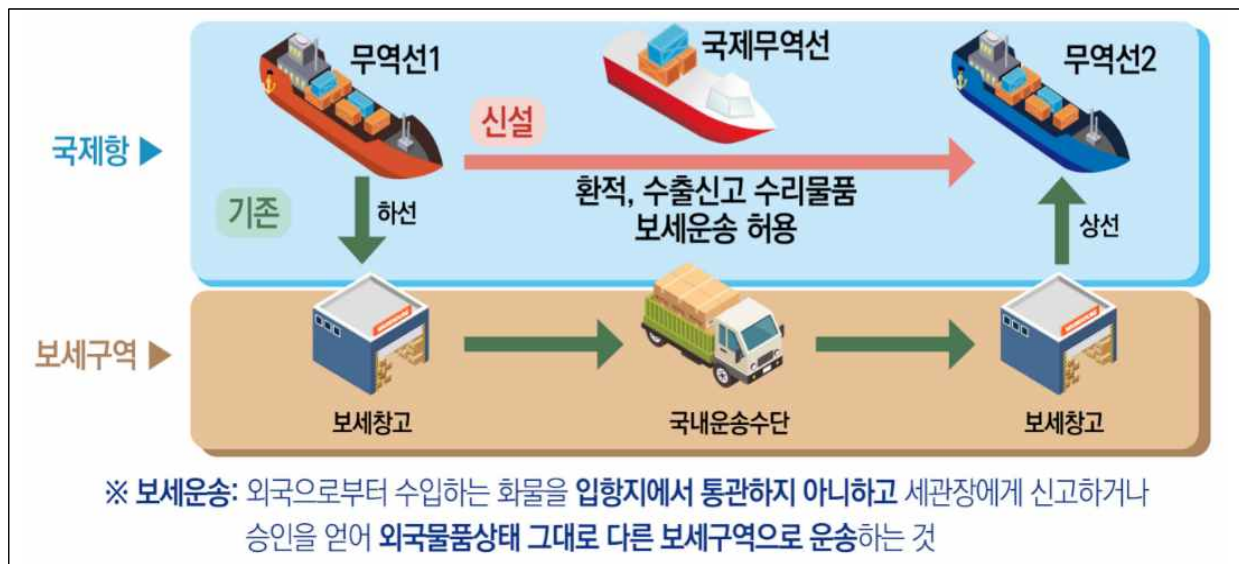
- **【기대효과】** 원유·곡물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기 전에 견본품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입업체 애로 해소 및 법적 안전성 확보

-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161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)

③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

- 국제항 내(예: 부산항 신항→북항)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*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
* 기존에는 국내운송수단(화물차, 국내운항선 등)에 의해서만 보세운송 가능



< 사 례 >

개정전	• A사는 환적컨테이너를 부산신항에서 부산북항으로 보세운송하는데,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었음
개정후	• A사는 환적 컨테이너를 부산신항에서 부산북항으로 운송 시 차량 외 국제무역선을 통해 보세운송할 수 있어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

- 【기대효과】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물품 등의 보세운송을 허용하여 환적물품 유치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

- 【시행일】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20조의2 신설)

※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

4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

-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*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.

* 기본수수료(시간당 2천원) + 실비상당액



< 사 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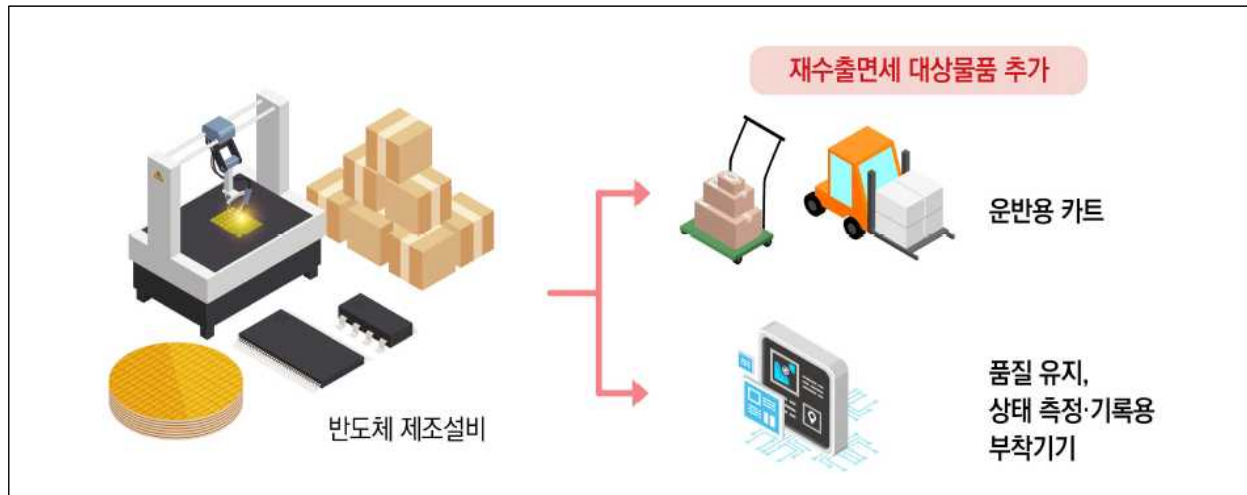
개정전	자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수입(반송)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의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, 수수료 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
개정후	A사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, 신고인 또는 보세창고 운영인은 수수료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됨

- **【기대효과】**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

-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47조제3항 개정)

5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

-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와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·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.



< 사 례 >

개정전	H사는 반도체 제조설비 및 운송 중 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설비에 부착하는 A기기를 수입하면서 해당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용기와 A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납부
개정후	H사는 해당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용기 및 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설비에 부착하는 A기기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아 생산비용 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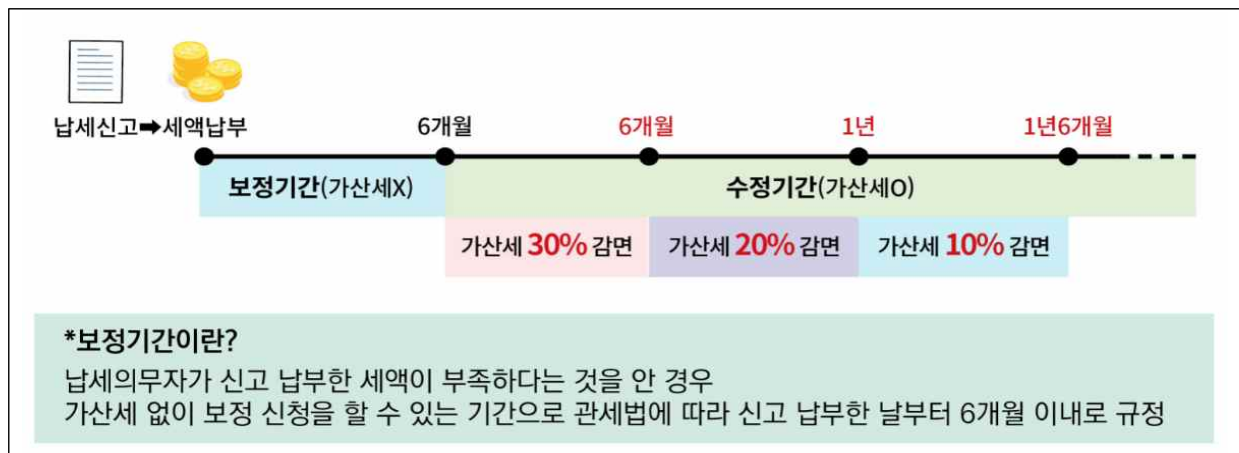
- **【기대효과】**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

-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50조 개정)

⑥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

-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(미납세액)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(부족세액)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,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.
- 구체적으로, 보정기간* 경과 후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%에서 30%로, ②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.

*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



< 사 례 >

개정 전	S사는 보정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정신청하여 부족세액(8억원)에 대한 가산세(8천만원)의 20%에 해당되는 16백만원을 감면 받음
개정 후	S사는 보정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정신청하여 부족세액(8억원)에 대한 가산세(8천만원)의 30%에 해당되는 24백만원을 감면 받음

- **【기대효과】**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
-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42조의2 개정)

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

-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 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,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.



< 사 례 >

개정전	A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○○세관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도중 검사대상 화물과 컨테이너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나, A사는 손상된 검사대상 화물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음
개정후	동일 사안에서, A사는 검사대상 화물 뿐 아니라 해당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발생한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음

- **【기대효과】**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
- **【시행일】** '24. 3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)

⑧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

-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‘60ml(밀리리터)’에서 ‘100ml(밀리리터)’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.



〈 사 례 〉

개정전

- 여행자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출국장에 위치한 OO 면세점에 방문하여 향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, 향수의 면세한도로 인하여 **면세한도 이내인 50mL 용량의 향수만을** 구매

개정후

- 여행자 A씨는 OO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30mL, 50mL용량 향수 뿐만 아니라 **100ml 용량 향수도 구매가 가능**해져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고 면세혜택 증가

- **【기대효과】** '79년부터 면세한도가 고정되어 있는 향수에 대해 면세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 편의 증진 및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

-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48조제3항 개정)

9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

-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을 정부(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 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AEO*(수입 부문에 한정)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.

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, 내부통제시스템, 재무건전성,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



< 사 례 >

개정전	수입 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인 'C사'는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받았으나,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예외 없이 사전심사를 받은 후 통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
개정후	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인 'C사'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가 생략되어 신속통관이 가능해짐

- **【기대효과】**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행정 낭비 방지

- **【시행일】** '23. 12. 27. 시행(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)

10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- ☐ 현행 관세정보시스템(유니패스*)의 운영을 민간위탁(지정사업자 제도)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.

*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,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

※ 공공기관으로 지정 시 국정감사 수감·경영공시 등 국회와 국민의 관리·감독을 강화

< 사 례 >

개정전	• 관세청은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위탁업체 A사를 유니패스 '운영사업자'로 지정하여,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
개정후	• 유니패스 운영·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을 설립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

- ☐ 【기대효과】 특수법인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설립으로 유니패스 운영의 공공성·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
- ☐ 【시행일】 '24. 7. 1. 시행(「관세법」 327조의2 개정)

11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

- ☐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.
- ☐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,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한다.

〈 사 례 〉

개정전	• 보세운송업체 A사는 차량번호 1234번으로 보세운송하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번호 5678번으로 보세운송하였음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음
개정후	• 보세운송업체 A사는 차량번호 1234번으로 보세운송하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번호 5678번으로 보세운송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음

- ☐ **【기대효과】**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
- ☐ **【시행일】**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16조 및 277조제5항 개정)

작 성 자

■ 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

황혜숙

KOTRA자료 24-047

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동향(24년 상반기)

발 행 인		유 정 열
발 행 처		KOTRA
발 행 일		2024년 3월
주 소		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(06792)
전 화		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		www.kotra.or.kr
문 의 처		종합상담실 (02-3497-1061)
I S S N		3022-8107



Copyright © 2024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